

무배당 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III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목 차

- 약관 이용 가이드 북
- 약관요약서
- 보험용어 해설
- 주계약 약관
- 제도성특약
 -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
 -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Guide Book



※ 同 Guide Book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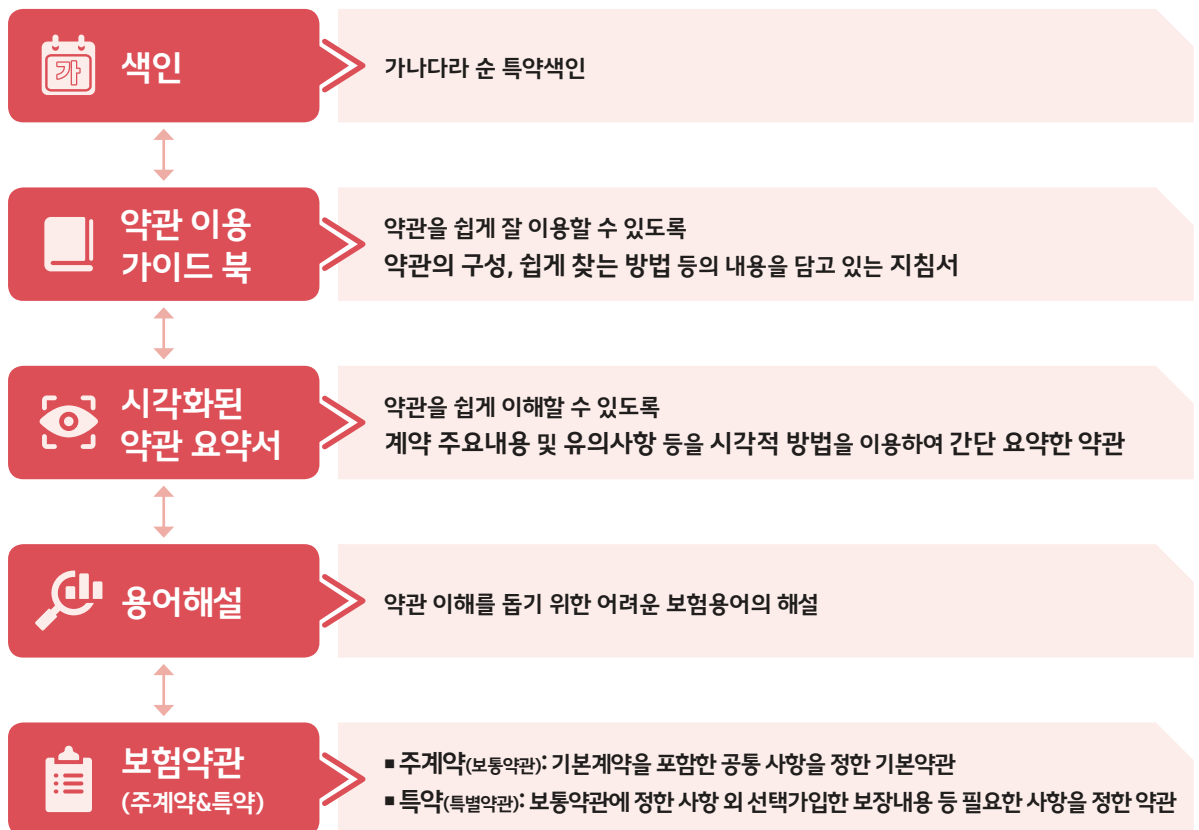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3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영상 자료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2 청약 철회

제19조(청약의 철회)



영상 자료

3 계약 취소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영상 자료

4 계약 무효

제21조(계약의 무효)



영상 자료

5 계약 前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영상 자료

6 해약환급금

제2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30조(해약환급금)



영상 자료

7 보험계약대출

제31조(보험계약대출)



영상 자료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aia.co.kr), 고객 콜센터(**1588-9898**)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I.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 보험상품명 : 무배당 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Ⅲ
- 보험상품의 종류 : 연금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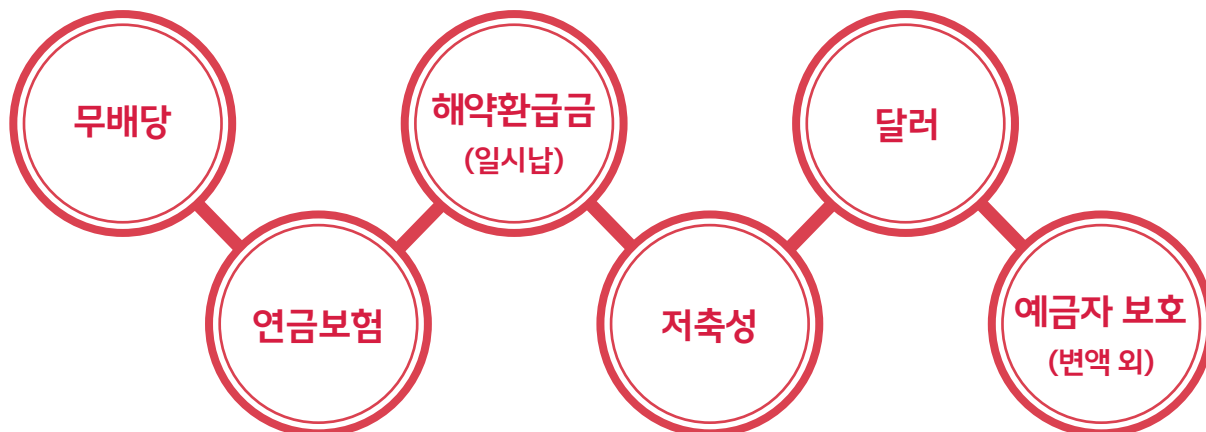
01. 상품의 주요 특징

이 상품은 장기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Ⅲ

1. **무배당** :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2. **연금보험** :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가입 후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 적용하여 적립합니다.
3. **해약환급금(일시납)**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저축성** : 저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 입니다.
5. **달러** : 이 상품의 기본통화는 달러로 설정되어 있어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등 계약과 관련한 통화를 미국달러로 운용합니다.
6. **예금자 보호(변액 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의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없습니다.

☑️ 감액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없습니다.

☑️ 보장한도

보장한도
최초
1회한

보장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보장한도 적용 담보

구분	담보명	보장한도
주계약	1. 고도재해장해보험금	1.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의 경우 최초 1회 에 한해 보장
	2. 생활자금 (1형 및 3형(생활자금형)에 한함)	2. 생활자금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생활자금 지급기간동안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지급
	3. 연금	3. 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주요민원사례> [동일한 질병(KCD)당 365일 동안 1회에 한하여 수술급여금 지급특약의 경우]

유형

다른 신체부위에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보험금을 1회만 지급받음

» 내용 : A고객은 무배당 00보험에 수술 보장 특약을 가입
건강검진에서 암 의심 진단을 받은 후 추가검사 결과 왼쪽 종아리와 오른쪽 종아리에 악성 근육종으로 진단 받은 후 입원하여 같은 날 왼쪽 및 오른쪽 종아리 근육 절제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
두 가지 신체부위에 수술을 받아서 수술급여금 2회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1회만 지급되어 민원을 제기

» 유의사항 : 동일한 질병에 2회이상의 수술을 받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설명) 수술 부위와 상관없이, 동일한 질병으로 같은 날 수술을 받은 바 수술급여금 1회만 지급

유형

두 가지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보험금을 1회만 지급받음

» 내용 : A고객은 무배당 00보험에 수술 보장 특약을 가입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의심 진단을 받은 후 추가검사 결과 좌측 유방암, 우측 유방 제자리암 진단받은 후 입원하여 같은 날 좌측과 우측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
두 가지 질병을 진단받고 좌측과 우측 유방 수술을 받아서 수술급여금 2회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1회만 지급되어 민원을 제기

» 유의사항 : 서로 다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설명) 유방은 피부조직의 하나이므로, 동일한 신체부위로 보아 수술급여금 1회만 지급

유형

암과 전이암 두 가지 질병으로 암수술을 받았으나 암수술 보험금을 1회만 지급받음

» 내용 : A고객은 무배당 00보험에 암수술 보장 특약을 가입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의심 진단을 받은 후 추가검사 결과 좌측 유방암(C50), 좌측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암(C77) 진단받은 후 입원하여 같은 날 좌측 유방 전절제술, 겨드랑이 림프절 광청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
두 가지 질병을 진단받고 두 가지 수술을 받아서 수술급여금 2회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1회만 지급되어 민원을 제기

» 유의사항 : 수술 부위와 상관 없이, 동일한 질병으로 같은 날 수술을 받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설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림프절 전이암은 원발부위인 유방암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
적음
[중도 해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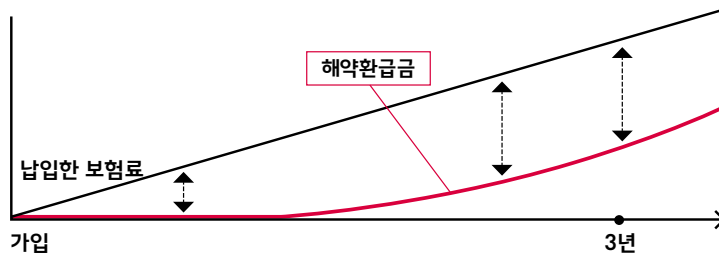


주의

①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 ·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일반상품 해약환급금



03.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I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4.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저축성보험



주의

- ① 이 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② 이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달러보험



주의

- ① 이 보험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② 이 보험상품은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미국의 금리수준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 ③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주의

(**변액보험 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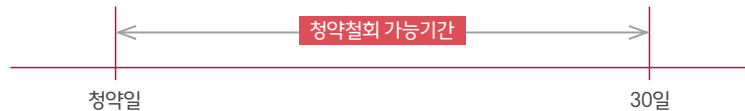
- ①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②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본 내용은 보험상품 전체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상품별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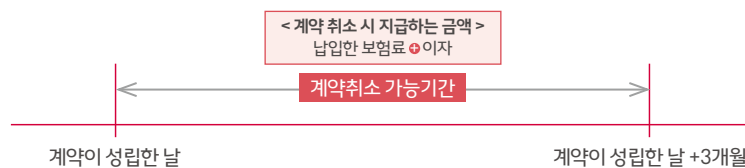
!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주의 ①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03. 보험계약의 무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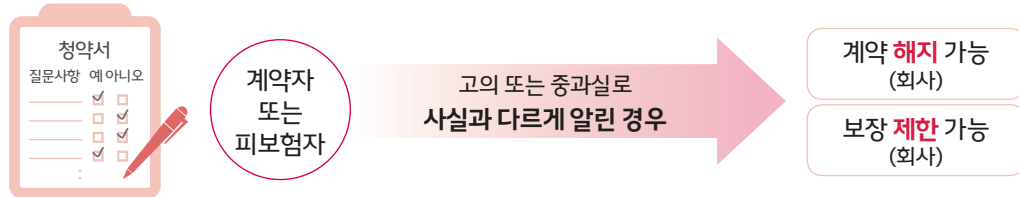
- ◎ 보험회사는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단,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경우 제외
-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4. 보험계약前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 주의
-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前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지식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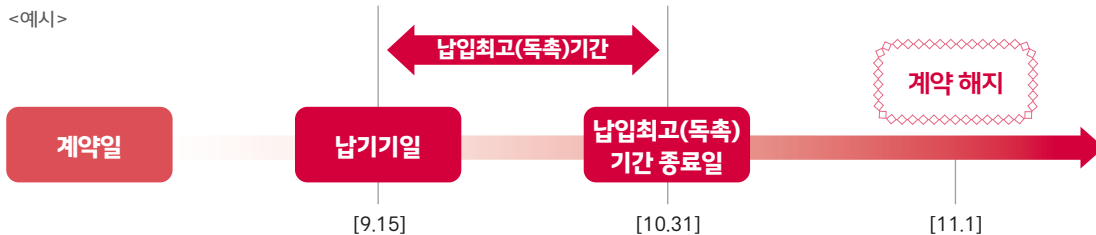
0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 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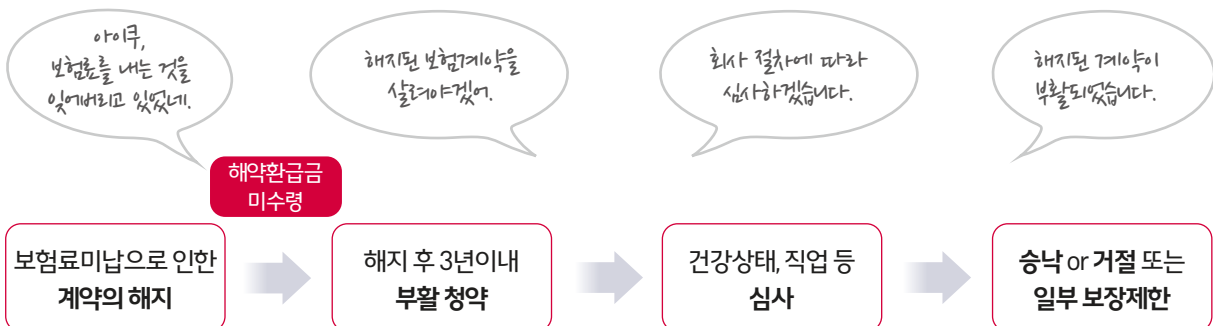


- ✓ 납입연체 : ①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② 유니버설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06.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7.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주의**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 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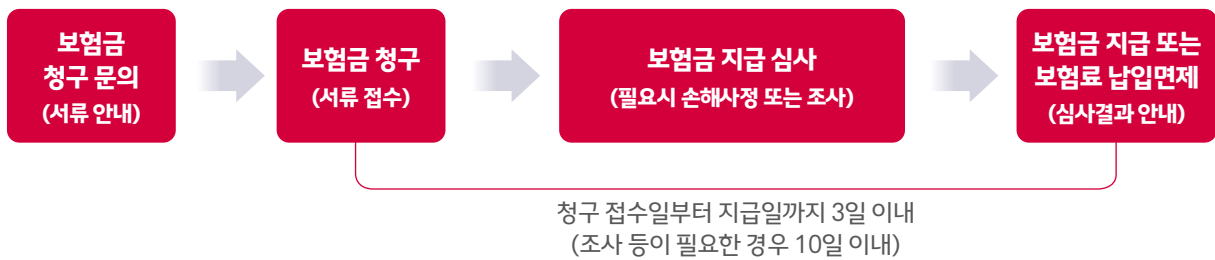
<예시>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공제금액			실 수령액
	원금	이자	계	
1,000만원	500만원	5만원	505만원	495만원

III.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8.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 ◎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주의** 보험금 청구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양식의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수익자 명의)
장해	● (장해진단서)					
진단	●				● (검사결과지 등)	
입원	△	●				
수술	△		●			
실손	△	●	●	●		

-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의무기록지,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손 통원비 청구금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진단서 대신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상 실명이 기재된 수익자가 아닌 경우 관계확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MY AIA 바로가기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및 보험기간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장에 따라 별도의 보장개시일이 존재할 수 있음

보험가입금액(구좌)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구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결정됨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이 고객권리안내문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고객님의 권리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님의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되며,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소개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A 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의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과 금융거래의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님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님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사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 화 : 1588-9898 (고객센터)
- 인터넷 : www.AIA.CO.KR
- 방 문 : 본사 및 가까운 지점으로 내방
- 서 면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 (순화동 216) AIA TOWER 25층 계약보전부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님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사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또는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님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사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전 화 : 1588-9898 (고객센터)
- 인터넷 : www.AIA.CO.KR
- 방 문 : 본사 및 가까운 지점으로 내방
- 서 면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 (순화동 216) AIA TOWER 25층 계약보전부

※ 신청자 제한 : 신용정보 주체에 한하며,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주체의 배우자 등 가족, 제3자는 신청불가)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님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 화 : 1588-9898 (고객센터)
- 인터넷 : www.AIA.CO.KR
- 방 문 : 본사 및 가까운 지점으로 내방
- 서 면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 (순화동 216) AIA TOWER 25층 계약보전부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 ☎ 02-2122-4000 | 인터넷 www.nice.co.kr |
|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1577-1006 | 인터넷 www.sci.co.kr |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6000 | 인터넷 www.koreacb.com |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 연락처 : 02-2259-9384
- 생명보험협회 개인정보보호인 연락처 : 02-2262-6600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국번없이) 1332

※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음성녹음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며, 추후 필요에 따라 고객님의께서 저희 회사 고객센터(1588-9898)로 요청하시면 음성녹음을 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III 약관

◆ 목

차 ◆

무배당 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 III 약관.....	4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4
제1조【목적】.....	4
제2조【용어의 정의】.....	4
제3조【통화】.....	7
제4조【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7
제2관 보험금의 지급.....	7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9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0
제9조【보험금의 청구】.....	10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10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1
제12조【주소변경통지】.....	12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12
제14조【대표자의 지정】.....	12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3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13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3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14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4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14
제19조【청약의 철회】.....	15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6
제21조【계약의 무효】.....	17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7

제22조의2【피보험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18
제23조【보험나이 등】.....	20
제24조【계약의 소멸】.....	21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1
제25조【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1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1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22
제2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22
제2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22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3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4
제30조【해약환급금】.....	24
제31조【보험계약대출】.....	24
제32조【배당금의 지급】.....	25
제33조【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	25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5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26
제35조【분쟁의 조정】.....	26
제36조【관할법원】.....	26
제37조【소멸시효】.....	26
제38조【약관의 해석】.....	26
제3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7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7
제41조【개인정보보호】.....	27
제42조【준거법】.....	27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8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29
<별표2> 장 해 분 류 표.....	32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54
<별표3> 재 해 분 류 표.....	56
<별표4> 해약환급금의 계산.....	58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61

무배당 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 III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이 계약은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되며,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 연금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의해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생활자금을 지급받거나(생활자금형에 한함),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의해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장해: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나. 재해: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이자 계산법

이자란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뉩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 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 계산법은?

- 단리계산법: $100 \text{ 원} + (100 \text{ 원} \times 10\%) + (100 \text{ 원} \times 10\%) = 120 \text{ 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begin{array}{l} \text{■ 복리계산법: } 100 \text{ 원} + (100 \text{ 원} \times 10\%) + [100 \text{ 원} + (100 \text{ 원} \times 10\%)] \times 10\% = 121 \text{ 원} \\ \text{원금} \quad \quad \quad 1 \text{ 년차 이자} \quad \quad \quad 2 \text{ 년차 이자} \end{array}$$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외부지표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가입시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입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이며,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까지
 -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나.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이 변동없이 확정 적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10년 이율확정형인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 20년 이율확정형인 경우: 계약일부터 20년

다. (생활자금형에 한함) 생활자금 지급기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10년 이율확정형인 경우: 계약일 이후 만 120개월 경과시점까지 지급
- 20년 이율확정형인 경우: 계약일 이후 만 240개월 경과시점까지 지급

라.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5. 보험료라 함은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한 일시납 보험료를 말합니다.
 6. 유지보너스: 유지보너스는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 유지보너스 = 일시납 보험료 X 유지보너스비율

나. 유지보너스비율

구분	발생시기	유지보너스비율	
1형, 2형 (10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계약해당일	일시납 보험료 US\$ 1,000,000 미만 계약	0%
		일시납 보험료 US\$ 1,000,000 이상 계약	5%
3형, 4형 (20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계약해당일	일시납 보험료 US\$ 1,000,000 미만 계약	0%
		일시납 보험료 US\$ 1,000,000 이상 계약	8%

7. (연금강화형에 한함) 연금강화보너스: 연금강화보너스는 연금강화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 연금강화보너스 = 일시납 보험료 X 연금강화보너스비율

나. 연금강화보너스비율

구분	발생시기	연금강화보너스 비율	
1형, 2형 (10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계약해당일	1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15년 미만 계약	2%
	연금개시시점의 계약해당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15년 이상 계약	5%
3형, 4형 (20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계약해당일	25%	
	연금개시시점의 계약해당일	10%	

- 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따라 연금개시나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 후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연금강화보너스를 계산합니다.

제3조【통화】

이 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합니다)의 통화로 하며,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금전의 수수(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연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는 미국의 통화로 합니다.

제4조【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연금계약 적립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설정된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에서 운용합니다.

연금계약 적립액

연금계약 적립액은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보험계약의 사업비), 위험보험료 및 중도인출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생활자금 지급기간동안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생활자금형의 경우에 한함)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④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

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애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애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하 “한시장애”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한시장애의 장애지급률로 정합니다.
- ⑥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별표2>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애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장애분류표(<별표2>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는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별표2>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⑨ 생활자금형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생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개시시점까지 지급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미지급된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액으로 지급받는 방법 중에서 한가지를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⑩ 계약자가 제9항에서 정한 미지급된 생활자금의 수령 방법을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액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의료법 제 3 조의 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⑫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일시납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합니다)+US\$1」이하일 경우 「일시납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합니다)+US\$1」로 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제24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다만, 사망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연금계약 적립액보다 큰 경우는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과 일시납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며, 생활자금형의 경우 이미 지급된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중대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제24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다만, 사망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연금계약 적립액보다 큰 경우는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과 일시납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며, 생활자금형의 경우 이미 지급된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지체없이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생활자금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금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제35조(분쟁의 조정)에 따르면 분쟁조정신청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 “불확정 개념” :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게 서술된 것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예시

보험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3년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3회)하는 경우

- 보험금 : 3천달러
- 지급 사유 발생 일자 : 20XX년 6월 1일

지급일	지급 금액
20XX년 6월 1일 (1회)	1천달러
20XX+1년 6월 1일 (2회)	1천달러 X (1 + 평균공시이율)
20XX+2년 6월 1일 (3회)	1천달러 X (1 + 평균공시이율) ²

- ③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등의 산출 기준 및 방법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12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4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계약자들이 연대(連帶)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다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신합니다.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행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며, 생활자금형의 경우 이미 지급된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ia.co.kr)의 공시실 → 적용이율 →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 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1.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2.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3.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6.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며, 생활자금형의 경우 이미 지급된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며, 생활자금형의 경우 이미 지급된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
 3. 계약자
 4. 피보험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

- 1)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리기 이전: 변경 전 보험수익자
- 2)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린 이후: 변경 후 보험수익자
- ※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연금지급형태를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종신연금형의 다른 보증유형을 포함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연금지급형태(<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확정연금형(10년/15년/20년)
 2. 상속연금형

- ⑤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 제4호의 피보험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의2(피보험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⑦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상법시행령 제 44 조의 2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⑧ 제3항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⑨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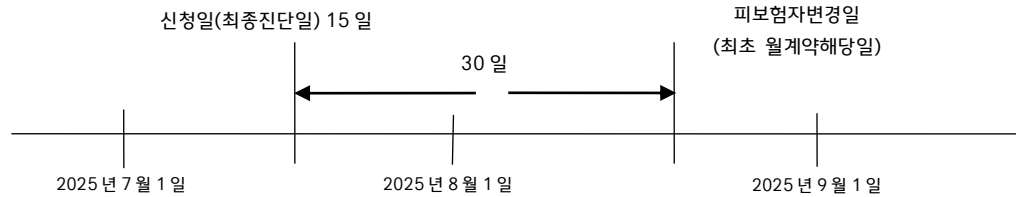
제22조의2【피보험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변경 전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30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3.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변경 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변경 후 피보험자”가 이 계약 체결시점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나이)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 “2. 피보험자 가입나이, 피보험자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서 정한 피보험자 가입나이 범위 이내 인 경우
 5.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 경우
- ② “변경 후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으로 합니다.
1.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계약자인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
 2.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변경 전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자녀
- ③ 계약자가 피보험자 변경을 신청할 때, 변경 전·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변경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일[다만,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의 변경을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변경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가 피보험자 변경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변경 신청은 취소됩니다.
1. “변경 후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만, 회사는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제4항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의 변경을 승낙하기 이전에 변경 전 피보험자의 나이가 변경 전 연금 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 ⑥ 계약자는 제4항에 따른 승낙일 전일까지 피보험자 변경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승낙일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⑦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을 준용합니다.
- ⑧ 제4항 및 제5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 변경 신청을 승낙한 경우 “피보험자 변경일”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이하, “피보험자 변경일”이라 한다)로 합니다.

“피보험자 변경일” 예시

월계약 해당일 : 매월 1일



- ⑨ 회사는 “피보험자 변경일” 전일까지 변경 전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하며, “피보험자 변경일”부터 변경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 변경일”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개시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 변경일” 현재 “변경 후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성별 및 이 계약의 가입 당시 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⑪ 제10항의 “변경 후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이 계약의 “피보험자 변경일” 직전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제23조(보험나이 등) 제2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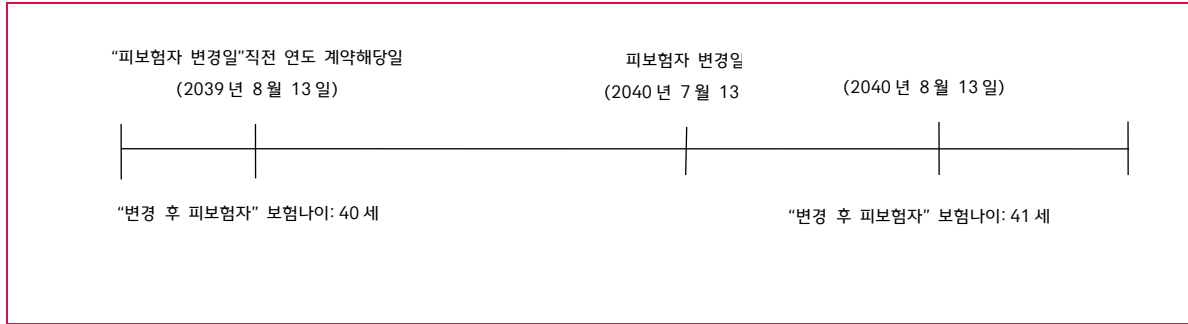
“변경 후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계산 예시

“변경 후 피보험자”의 생년월일 : 2000년 1월 1일

계약일 : 2016년 8월 13일

피보험자 변경일 : 2040년 7월 13일

→ 2039년 8월 13일 - 2000년 1월 1일 = 39년 7월 12일 = 보험나이 40세



- ⑫ 계약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변경 후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⑬ 제12항에 따른 “변경 후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는 사업방법서 “2. 피보험자 가입나이, 피보험자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서 정한 연금개시나이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변경 후 피보험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⑭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 및 연금액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자금형 계약의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피보험자를 변경한 경우, “피보험자 변경일” 이후 생활자금액은 제10항에 따라 “변경 후 피보험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제22조의2(피보험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변경이 적용된 계약의 경우 “변경 후 피보험자”의 나이도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제22조의2(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 제1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예시

계약일이 2020년 2월 29일인 경우 2021년의 계약해당일은 2021년 2월 28일로 합니다.

- ③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료를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6년 9월 18일			
사례1) 계약일:	2019년 1월 18일	사례2) 계약일:	2019년 4월 20일
	2019년 1월 18일		2019년 4월 20일
	- 1986년 9월 18일		- 1986년 9월 18일
	만 32년 4월 0일		만 32년 7월 2일
	→ 보험나이 32세		→ 보험나이 33세

제24조【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다만, 사망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연금계약 적립액보다 큰 경우는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과 일시납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며, 생활자금형의 경우 이미 지급된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제5관 보험료의 납입**제25조【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단,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초과 청약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

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손해를 변상 받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 징수 처분 및 그 절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3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위법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때 계약해지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 위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 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0조(해약환급금) 제6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0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별표4>“해약환급금의 계산” 참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보험계약일부에서 이율확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시장가격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⑤ 제4항의 시장가격조정률(MVA)은 10년 이율확정형인 경우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하며, 20년 이율확정형인 경우 3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⑥ 제2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1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 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신청 방법

회사가 정한 보험계약대출 신청 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ia.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3조(통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은 미국의 통화로 지급되며,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도 모두 미국의 통화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제32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무배당보험

무배당보험은 계약자에게 따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으로,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

-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연금계약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연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금계약 적립액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US\$2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연금계약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보험연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금계약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연금계약 적립액이 일시납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④ 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또는 16일에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여 결정하며,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은 보험가입시점부터 이율확정기간 동안 변동없이 확정 적용합니다.
- ③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에는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하고,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1일 또는 16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2회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연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연1.5%일 경우), 적립액은 공시이율(연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1.5%)로 적립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법적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예를 들면, 2017년 1월 1일에 보험사고 발생시 2020년 1월 1일까지)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당사자의 공박, 경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 무효인 합의를 말합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약관 제5조 제1호)

지급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지급내용	US\$ 10,000

☐ 생활자금 (약관 제5조 제2호)

지급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생활자금 지급기간동안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생활자금형에 한함)
지급내용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일시납 보험료가 되도록 매월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 (주) 1.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중도인출금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2.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및 제22조의2(피보험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생활자금 해당액은 변경된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되며,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일시납 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 (약관 제5조 제3호)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내용
종신 연금형	보증 기간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차년도 또는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 보증유형 >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연금지급형태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보증 금액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 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 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 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보 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 년, 20년)의 매년 보험계 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 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 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을 지급)

- (주) 1.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
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중도인출금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
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
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
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
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
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
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
는 10년, 15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
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
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8.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9.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생활자금형의 경우, 계약자가 미지급된 생활자금의 수령 방법을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액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장 해 분 류 표

I. 총칙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장애지급률로 합니다.
- 5) 위 4)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합니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3. 장애의 판정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3)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상 간

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5) 장애인단서에는 ① 장애인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장애의 경우 ① 개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II.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애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 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합니다.
-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합니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합니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1)}, 안전수지(Finger Counting)^{※2)} 상태를 포함합니다.

※ 주 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 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애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합니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애'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애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8) '뚜렷한 시야 장애'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애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합니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2. 귀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합니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pm 10\text{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합니다.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만 평가합니다.

라. 평형기능의 장애

- 1)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애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항목	내용	점수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장해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 2) 평형기능의 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합니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의 지급률과 추상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합니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애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합니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애(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하나만 인정합니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

- 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합니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합니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합니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times 10\text{cm}$ (1/2 크기는 40cm^2 ,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times 8\text{cm}$ (1/2 크기는 24cm^2 ,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times 6\text{cm}$ (1/2 크기는 12cm^2 , 1/4 크기는 6cm^2)로 간주합니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	10%

나. 장애판정기준

-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합니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애로 평가합니다.
-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합니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47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동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동 시행규칙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추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 2 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합니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해

-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 1, 2 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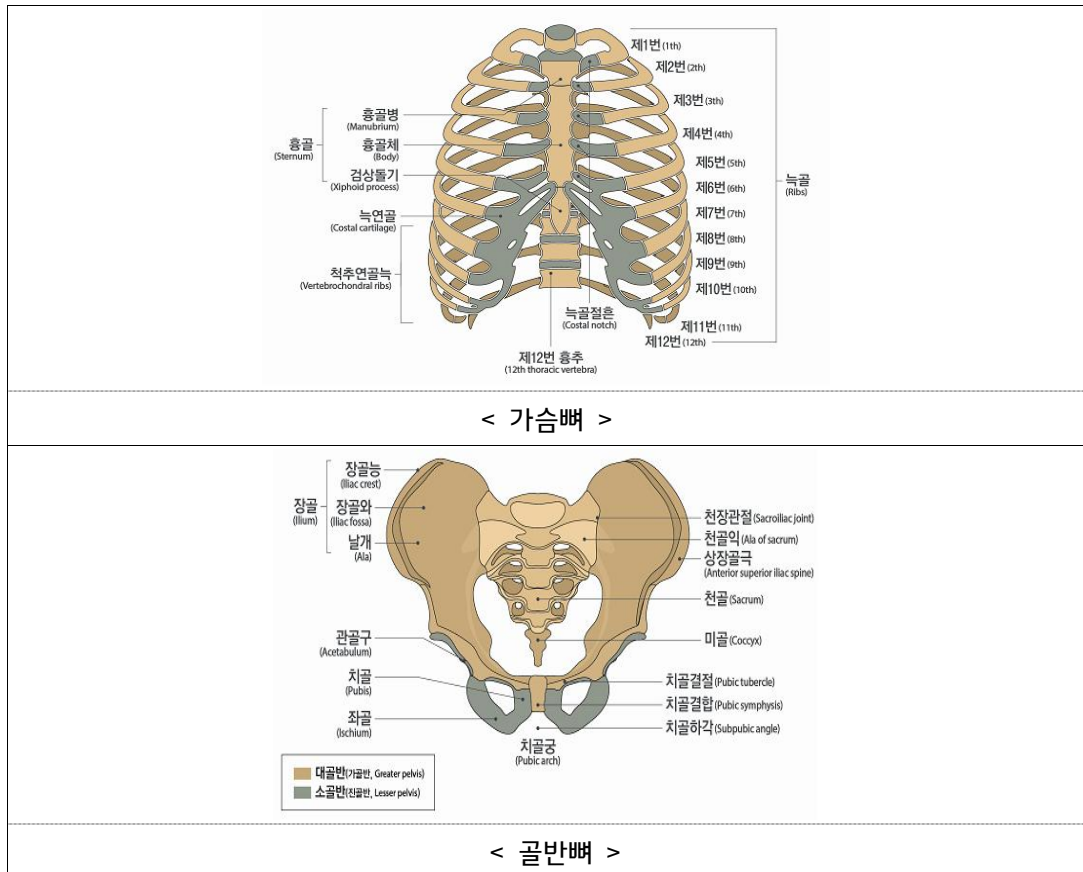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 2 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봅니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3) '빛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합니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합니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합니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합니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합니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6) 팔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합니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릅니다.
 - 나) 관절기능장애를 표시할 경우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합니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 지급률의 결정

-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합니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장해의 분류	지급률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합니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합니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합니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합니다.
-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합니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지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릅니다.
 -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애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합니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합니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합니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합니다.

10. 손가락의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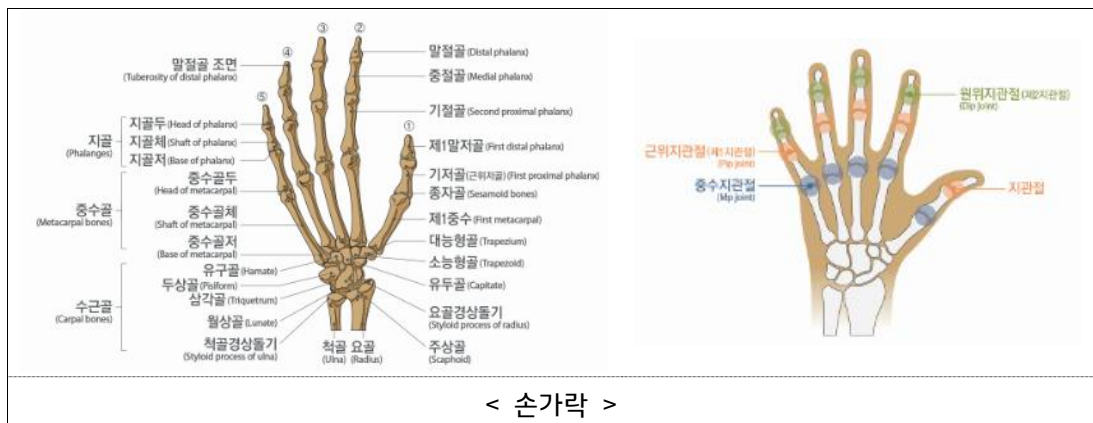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 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5%

장해의 분류	지급률
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합니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합니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습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합니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습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릅니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합니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릅니다.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합니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합니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합니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 7)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릅니다.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5%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애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애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애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애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때 ADLs 장애 지급률을 준용합니다.
- 8) 상기 장애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 점	100%
8) 심한치매 : CDR 척도 4 점	80%

장해의 분류	지급률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 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 점	40%
11) 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불임>일상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나) 위 가)의 경우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합니다.

마)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합니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애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정신행동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정신행동장애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합니다.

카) 정신행동장애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합니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치매의 장애평가는 임상적인 증상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합니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합니다.

다)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릅니다.

4) 뇌전증

가) “뇌전증”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심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라)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합니다.
-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합니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 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 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 을 자르지 못하는 상태	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 도루, 장루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 처리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 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 한 상태	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 움이 필요한 상태	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옷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유형	제한정도	지급률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별표3> 재 해 분 류 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4> 해약환급금의 계산**1.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1) 계약이 보험계약일부터 이율확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때에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 = \begin{cases} 1 - \left(\frac{1+A}{1+B+0.5\%} \right)^{\frac{N}{12}} & (10\text{년 이율확정형}) \\ 1 - \left(\frac{1+A}{1+B+0.4\%} \right)^{\frac{N}{12}} & (20\text{년 이율확정형}) \end{cases}$$

(주) ① A: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

② B: 이율확정기간 중 해약환급금 계산시점의 공시이율

③ N: 잔여월수 (해약환급금 계산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 시장가격조정률(MVA)은 10년 이율확정형인 경우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하며, 20년 이율확정형인 경우 3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취지

이 보험에서 이율확정기간동안 이율을 확정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회사는 이율확정기간의 만기구조를 갖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자산과 부채를 대응시키는 투자전략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가격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보험의 이율확정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처분함에 따라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의 시장가격(매각손실 또는 이익)을 해약환급금에 반영하기 위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 계산 예시

(1) 계약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2.0%p 높은 경우

• 10년 이율확정형

구분	예시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 (①)	3.25%
해지시점의 공시이율 (②)	5.25%

구분		예시
시장가격 조정률 (③)	1년	19.37%
	2년	17.42%
	3년	15.42%
	4년	13.37%
	5년	11.27%
	7년	6.93%
	10년	0.00%

• 20년 이율확정형

구분		예시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 (①)		3.25%
해지시점의 공시이율 (②)		5.25%
시장가격 조정률 (③)	1년	30.00%
	2년	30.00%
	3년	30.00%
	4년	30.00%
	5년	29.16%
	7년	25.82%
	10년	20.53%
	15년	10.85%
	20년	0.00%

(주) 1. 위의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은 시장가격조정률의 계산예시를 위하여 가정한 공시이율이며, 실제 계약상의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③)

10년 이율확정형의 시장가격조정률(③) = $1 - \{[(1 + ①)/(1 + ② + 0.5\%)]^{(잔여월수/12)}\}$

20년 이율확정형의 시장가격조정률(③) = $1 - \{[(1 + ①)/(1 + ② + 0.4\%)]^{(잔여월수/12)}\}$

(2) 계약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낮은 경우

• 10년 이율확정형

구분		예시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 (①)		3.25%
해지시점의 공시이율 (②)		1.00%
시장가격 조정률 (③)	1년	-16.63%
	2년	-14.65%
	3년	-12.71%
	4년	-10.80%

	5년	-8.92%
	7년	-5.26%
	10년	0.00%

• 20년 이율확정형

구분		예시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 (①)		3.25%
해지시점의 공시이율 (②)		1.00%
시장가격 조정률 (③)	1년	-40.99%
	2년	-38.46%
	3년	-35.98%
	4년	-33.55%
	5년	-31.15%
	7년	-26.50%
	10년	-19.82%
	15년	-9.46%
	20년	0.00%

(주) 1. 위의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은 시장가격조정률의 계산예시를 위하여 가정한 공시이율이며, 실제 계약상의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③)

10년 이율확정형의 시장가격조정률(③) = $1 - \{[(1 + ①)/(1 + ② + 0.5\%)]^{(잔여월수/12)}\}$

20년 이율확정형의 시장가격조정률(③) = $1 - \{[(1 + ①)/(1 + ② + 0.4\%)]^{(잔여월수/12)}\}$

3.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의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0%를 적용하였습니다.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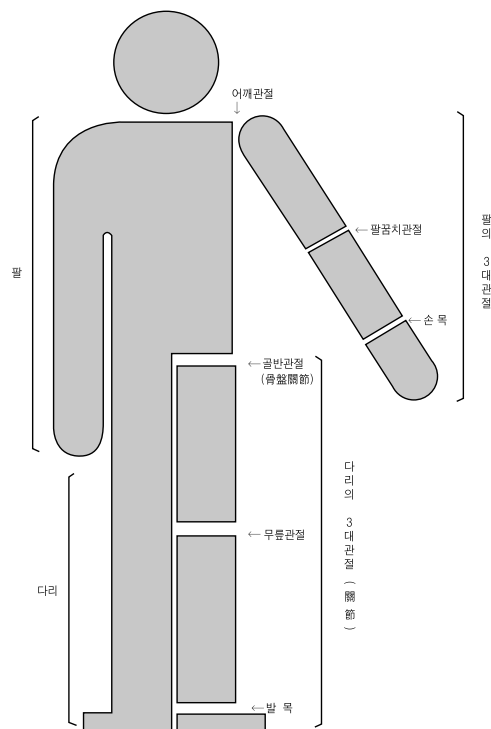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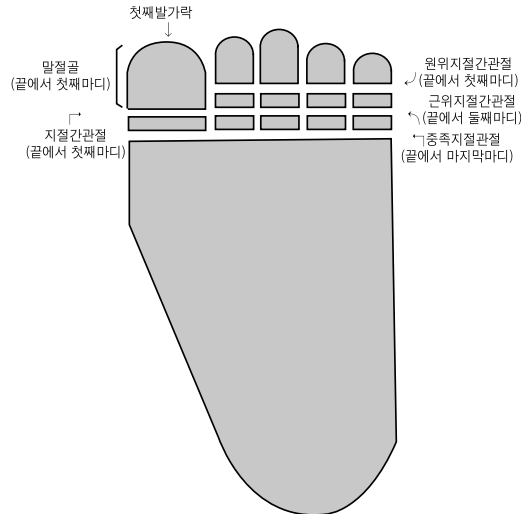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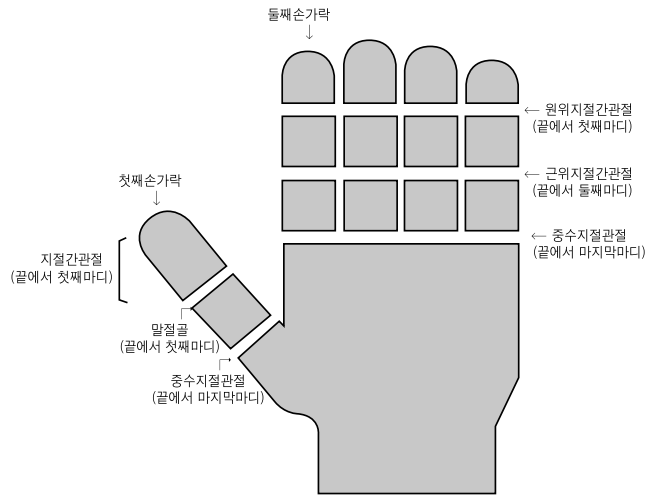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제5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생활자금 (제5조 제2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연금개시시점(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내	공시이율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연금 (제5조 제3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30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생활자금 및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제37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소멸(제24조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 계약 적립액(다만, 사망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연금계약 적립액보다 큰 경우는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과 일시납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며, 생활자금형의 경우 이미 지급된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 중 큰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②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
 - ③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
 - ④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가산이율 적용)**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7.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신체부위의 설명도



특 약

-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
-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약의 페이지 시작 번호는 각 특약마다 다릅니다.

원 화 환 산 지 급 서 비 스 특 약
약 관

◆ 목 차 ◆

원 화 환 산 지 급 서 비 스 특 약 약 관	3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와 목적】.....	3
제2조【용어의 정의】.....	3
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
제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4
제3관 보험료의 납입	5
제4조【보험료의 납입】.....	5
제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5
제4관 특약의 해지	5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5
제5관 환산기준일.....	5
제7조【적용환율】.....	5
제8조【환산기준일의 적용】.....	5
제6관 기타사항.....	6
제9조【보험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6
제10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6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와 목적】

①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합니다)의 통화로 하며, 주계약과 관련한 모든 금전의 수수(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등의 지급, 보험계약 대출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등)는 미국의 통화(이하 “미화”라 하며, 그 단위는 “달러”라 합니다)로 합니다. 하지만 계약자는 이 특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화(이하 “원화”라 하며, 그 단위는 “원”이라 합니다)로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나. 환산기준일: 보험금 등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3. 환산기준 관련 용어

가. 지급기준환율: 회사가 보험금 등의 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주거래은행”이라 합니다)이 해당 일에 최초 고시하는 송금을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율)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일에 최초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을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율)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지급기준환율						
주거래은행 고시환율						특약적용환율
고시환율	매매기준율	현찰		송금 (전신환)		지급기준환율
		살 때	팔 때	보낼 때 (전신환매도)	받을 때 (전신환매입)	
USD (\$)	1,300.70	1,323.46	1,277.94	1,313.40	1,288.00	1,288.00 ~ 1,300.70

회사는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초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율)의 범위에서 지급기준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해당 환산기준일의 매매기준율은 1,300.70원, 전신환매도율은 1,288.00원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1,288.00원과 1,300.70원 범위에서 지급기준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나. 전신환매입율: 전신을 이용하여 송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로, 은행이 고객의 통화를 전신으로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며, 통상 고객입장에서 전신환매입율(받을 때)로 표기됩니다.

다. 매매기준율: 외국환은행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적용하는 각종 환율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중심환율(기준환율)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되어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거나,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4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4관 특약의 해지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가 주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특약도 동시에 해지되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5관 환산기준일

제7조【적용환율】

계약자가 이 특약을 통해 “원화”로 보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환산기준일의 지급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제8조【환산기준일의 적용】

지급형태에 따른 환산기준일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의 지급형태는 모두 당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환산기준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영업일을 환산기준일로 하여 환산합니다.

지급형태	환산기준일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반환	지급당일

(품질보증해지, 계약취소 등)	
중도인출	접수일 + 제2영업일
해약환급금	접수일 + 제2영업일
감액	접수일 + 제2영업일
보험금	접수일 + 제2영업일
연금 및 중도지급금	지급당일

예시

1월 2일(영업일), 1월 3일(영업일),
1월 4일(공휴일), 1월 5일(영업일), 1월 6일(영업일)

1. 해약환급금 \$1,000을 1월 2일에 접수할 경우, (1월 5일 지급기준환율은 \$1 = ₩1,150로 가정)

* 해약환급금 접수일인 1월 2일로부터 그 다음 날인 1월 3일은 영업일이 나, 1월 4일이 공휴일이므로, 환산기준일은 접수일 + 제2영업일인 1월 5일이 됩니다.

따라서 $\$1,000 \times ₩1,150 = ₩1,150,000$ 이 해약환급금이 됩니다.

2. 사망보험금이 \$100,000을 1월 3일에 접수할 경우, (1월 6일 지급기준환율은 \$1 = ₩1,140로 가정)

* 사망보험금 접수일인 1월 3일로부터 그 다음 날인 1월 4일이 공휴일이므로, 환산기준일은 접수일 + 제2영업일인 1월 6일이 됩니다.

따라서 $\$100,000 \times ₩1,140 = ₩114,000,000$ 이 사망보험금이 됩니다

제6관 기타사항**제9조【보험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회사가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계약에 대해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한 보험금 등을 취소하는 경우 고객은 지급받은 원화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0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원 화 환 산 납 입 서 비 스 특 약
약 관

◆ 목

차 ◆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약관	3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와 목적】	3
제2조【용어의 정의】	3
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
제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4
제3관 보험료의 납입	5
제4조【보험료의 납입】	5
제5조【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5
제4관 특약의 해지.....	5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5
제5관 환산기준일	5
제7조【적용환율】	5
제8조【환산기준일의 적용】.....	5
제9조【원화고정납입옵션】.....	6
제10조【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에 관한 사항】.....	6
제11조【원화고정납입옵션 등의 해지】.....	7
제6관 기타사항.....	7
제12조【보험료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7
제13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8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와 목적】

- ①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합니다)의 통화로 하며, 주계약과 관련한 모든 금전의 수수(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등의 지급,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등)는 미국의 통화(이하 “미화”라 하며, 그 단위는 “달러”라 합니다)로 합니다. 하지만 계약자는 이 특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화(이하 “원화”라 하며, 그 단위는 “원”이라 합니다)로 보험료 등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나. 환산기준일: 보험료 등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3. 환산기준 관련 용어

가. 납입기준환율: 고객이 보험료 등의 금액을 납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주거래은행”이라 합니다)이 해당 일에 최초 고시하는 송금을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일에 최초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을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납입기준환율						
주거래은행 고시환율						특약적용환율
고시환율	매매기준율	현찰		송금 (전신환)		납입기준환율
		살 때	팔 때	보낼 때 (전신환매도)	받을 때 (전신환매입)	
USD (\$)	1,300.70	1,323.46	1,277.94	1,313.40	1,288.00	1,300.70 ~ 1,313.40

회사는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초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의 범위에서 납입기준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해당 환산기준일의 매매기준율은 1,300.70원, 전신환매도율은 1,313.40원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1,300.70원과 1,313.40원 범위에서 납입기준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나. 전신환매도율: 전신을 이용하여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 은행이 고객의 통화를 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며, 통상 고객입장에서 전신환매도율(보낼 때)로 표기됩니다.

다. 매매기준율: 외국환은행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적용하는 각종 환율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중심환율(기준환율)을 말합니다.

라. 원화환산보험료: 미화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되어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거나,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4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5조【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계약자가 주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주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제9조(원화고정납입옵션)에 따라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신청한 경우, 제10조(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을 통해 원화환산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4관 특약의 해지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가 주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특약도 동시에 해지되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5관 환산기준일

제7조【적용환율】

계약자가 이 특약을 통해 “원화”로 보험료 등을 납입하고자 할 경우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환산합니다.

제8조【환산기준일의 적용】

납입형태에 따른 환산기준일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에서 정의되지 않는 기타의 납입형태는 모두 당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환산기준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영업일을 환산기준일로 하여 환산합니다.

납입형태	환산기준일
제1회 보험료 또는 일시납 보험료	계약당일
제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체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납입당일
제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자동이체일 - 제2영업일
정기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일 - 제2영업일
수시추가납입보험료	신청일 + 제2영업일
원화고정납입옵션 (원화고정납입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및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시)	자동이체일 - 제2영업일

제9조【원화고정납입옵션】

- ①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제10조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에 관한 사항)의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옵션을 동시에 부가합니다.
- ②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신청할 때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보험료로 납입할 금액을 만원단위로 선택합니다.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원화고정납입보험료는 아래의 범위에서 정하며, 최소금액은 천 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 최대금액은 천 원 단위에서 내림 처리하여 만원 단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구분	금액
원화고정납입보험료 최소금액	주계약 기본보험료 × 신청일의 납입기준환율 × 115%
원화고정납입보험료 최대금액	주계약 기본보험료 × 신청일의 납입기준환율 × 180%

- ③ 제1항에 따라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신청한 계약자는 매월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납입하고,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한 원화고정납입보험료 중 원화환산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납입으로, 원화환산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 적립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매월 환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 ④ 환율 변동으로 인해 원화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원화환산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이 때 적립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없습니다.
- ⑤ 제4항의 경우 회사는 원화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한 사실을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원화고정납입보험료의 범위는 변경을 신청한 날의 납입기준환율로 합니다.

제10조【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에 관한 사항】

- ① 원화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원화환산보험료에서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고정납초과보험료”라 합니다)하였을 경우,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고정납초과보

험료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을 자동으로 인출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납입한 원화고정납입보험료 및 자동인출 금액을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납입으로 처리합니다.

③ 인출 한도 및 인출 시 수수료 등 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④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의 잔액이 고정납초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의 실행이 불가능함을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변경하거나 원화환산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원화고정납입옵션 예시

- (1) 원화고정납입옵션 신청시 원화고정납입보험료 선택 범위
(주계약 보험료 US \$100, 납입기준환율 US \$1=1,320원 가정)
 - 최소신청금액 : $US \$100 \times 115\% \times 1,320\text{원} = 151,800\text{원} \rightarrow 160,000\text{원}$ (천원단위 올림)
 - 최대신청금액 : $US \$100 \times 180\% \times 1,320\text{원} = 237,600\text{원} \rightarrow 230,000\text{원}$ (천원단위 내림)
- (2) 원화고정납입보험료가 원화환산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되는 금액
(주계약 보험료 US \$100, 해당 회차 보험료 환산기준일 납입기준환율 US \$1=1,320원, 원화고정납입보험료 200,000원 가정)
 - 추가납입보험료: $200,000\text{원} - (US \$100 \times 1,320\text{원}) = 68,000\text{원}$
 $\rightarrow 68,000\text{원} \div 1,320\text{원} = US \$ 51.52$ (환산기준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변동)
- (3) 원화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고정납초과보험료 금액
(주계약 보험료 US \$100, 해당 회차 보험료 환산기준일 납입기준환율 US \$1=2,100원, 원화고정납입보험료 200,000원 가정)
 - 원화환산보험료가 210,000원일 때, 원화고정납입보험료 200,000원을 초과하므로
 고정납초과보험료 10,000원($210,000\text{원} - 200,000\text{원}$)을 납입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인 US \$4.76($10,000\text{원} \div 2,100\text{원}$)이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자동으로 인출되어 원화고정납입보험료 US \$95.24($200,000\text{원} \div 2,100\text{원}$)와 함께
 주계약 기본보험료로 납입됩니다. (예시금액에서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에 관한 금액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제11조【원화고정납입옵션 등의 해지】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원화고정납입옵션 및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은 해지됩니다.

1. 계약자가 원화고정납입옵션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단, 제9조에 따라 옵션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경우(단, 제5조에 따라 주계약과 함께 이 특약의 부활이 있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옵션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6관 기타사항

제12조【보험료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계약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을 돌려드리는 경우 제8조(환산기준일의 적용)에서 환산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제외)로 하여 원화로 돌려드립니다.

1. 계약의 청약철회

-
2. 계약의 거절 또는 반송
 3. 계속보험료 1회분 또는 정기추가납입보험료 1회분의 반환

계속보험료 1회분 또는 정기추가납입보험료 1회분의 반환

보험료의 납입이 중복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납입된 보험료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13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지 정 대 리 청 구 서 비 스 특 약
약관

◆ 목 차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3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3

 제1조【적용대상】 3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3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3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3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3

제3관 보험금 지급 4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4

 제6조【보험금 등 청구】 4

제4관 기타사항 4

 제7조【주계약 및 특약 약관 규정의 준용】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라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3관 보험금 지급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관 기타사항

제7조【주계약 및 특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